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경찰정책 수립·관리 기능과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사이버테러대응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총정 2명)을 증원하며, 정원 2명(경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2명)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14명(경정 7명, 경감 132명, 경위 116명, 경사 156명, 경장 165명, 순경 288명, 6급 10명, 7급 30명, 8급 10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86명(경감 171명, 경위 55명, 경사 50명, 경장 1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0명(경위 5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50명)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0.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경찰담당관”을 “자치경찰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자치경찰담당관”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5항제1호가목 중 “성폭력, 가정폭력”을 “성폭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학교폭력”을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제18조제1항 중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사이버범죄수사과·사이버테러

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를 “사이버범죄”로, “지휘·감독 및 통제”를 “지휘·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립·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요 정책의 연계·통합 및 조정

제42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제54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요 정책의 연계·통합 및 조정

제7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톡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별표 13 중 총계 “1,919”를 “1,9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9”를 “1,211”로 하며, 총경 “49”를 “51”로, 경정 “164”를 “166”으로, 경감 “419”를 “417”로 하고, 일반직 계 “710”을 “711”로 하며, 학예연구사 1 다음에 “보건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14 중 총계 “1,997”을 “2,00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9”를 “1,211”로 하며, 총경 “49”를 “51”로, 경정 “164”를 “166”으로 하며, 경감 “419”를 “417”로 하고, 일반직 계 “788”을 “789”로 하며, 보건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132,086”을 “133,00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2,045”를 “132,959”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7,772”를 “128,636”으로 하고, 경정 “2,801”을 “2,808”로, 경감 “9,770”을 “9,952”로, 경위 “15,211”을 “15,277”로, 경사 “26,192”를 “26,348”로, 경장 “32,707”을 “32,872”로, 순경 “40,467”을 “40,755”로 하며, 일반직 계 “4,251”을 “4,301”로 하고, 행정주사 “71”을 “79”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9”를 “10”으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8”을 “49”로, 행정주사보 “352”를 “372”로,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5”를 “38”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6”을 “73”으로, 행정서기 “1,156”을 “1,163”으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6”을 “57”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4”를 “236”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132,765”를 “133,679”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2,724”를 “133,638”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7,772”를 “128,636”으로 하고, 경정 “2,801”을 “2,808”로, 경감 “9,770”을 “9,952”로, 경위 “15,211”을 “15,277”로, 경사 “26,192”를 “26,348”로, 경장 “32,707”을 “32,872”로, 순경 “40,467”을 “40,755”로 하며, 일반직 계 “4,930”을 “4,980”으로 하고, 행정주사 “112”를 “120”으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9”를 “10”으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8”을 “49”로, 행정주사보 “399”를 “419”로,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5”를 “38”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6”을 “73”으로, 행정서기 “1,351”을 “1,358”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4”를 “65”로 하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4”를 “236”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	1명 (총정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18 제2호나목에 34)부터 3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사건심사 업무(시·도경찰청)	154명 (경감 15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5)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6)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72명 (경감 17명, 경위 16명, 경사 3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재 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u>자치경찰담당관</u> 및 과학치안 정책팀장 각 1명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 ----- ----- -- <u>자치경찰담당관·정책지원담</u> <u>당관</u> -----.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 <u>규제</u> <u>개혁법무담당관</u> 및 <u>자치경찰담</u> <u>당관</u> 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하며, 과학치안정책팀장은 기 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규제</u> <u>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u> <u>관</u> 및 <u>정책지원담당관</u> ----- ----- ----- ----- -----.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	③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u> <u>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u> <u>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u> <u>다.</u>
	1. <u>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u>

⑦ (생략)

제17조(형사국) ① ~ ④ (생략)

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
사지휘·감독

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나. 학교폭력, 소년범죄, 아동
학대, 실종 사건

<신설>

2. ~ 5. (생략)

제18조(사이버수사국) ① 사이버
수사국에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범죄수사과 및 디지털포
렌식센터를 둔다.

②·③ (생략)

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개
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
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협
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
련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7조(형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이버수사국) ① -----

--사이버범죄수사과·사이버테
러대응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및
통제

3. (생략)

4.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5.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관련 국제공조수사

6.·7. (생략)

<신설>

④ -----
-----.

1. (현행과 같음)

2. 사이버범죄 -----
----- 지휘·감독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7. (현행과 같음)

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
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
휘·감독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
립·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
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
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

⑤ (생 략) 제37조(경무부) ①·② (생 략)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④·⑤ (생 략) 제42조(생활안전부) ① ~ ④ (생 략)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⑥ (생 략)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u>계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7조(경무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주요 정책의 연계·통합 및 조정</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생활안전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u>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u>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경무기획과)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주요 정책의 연계·통합 및 조정</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

제72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72조(여성청소년과) ----- -----. 1. ~ 6. (현행과 같음) <u>7.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u> <u>에 관한 업무</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3]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19</u>	<u>1,922</u>	+3
경찰공무원 계	<u>1,209</u>	<u>1,211</u>	+2
·	·	·	
·	·	·	
총 경	<u>49</u>	<u>51</u>	+2
경 정	<u>164</u>	<u>166</u>	+2
경 감	<u>419</u>	<u>417</u>	-2
·	·	·	
·	·	·	
일반직 계	<u>710</u>	<u>711</u>	+1
·	·	·	
·	·	·	
학예연구사	1		
<u>보건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1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97</u>	<u>2,000</u>	+3
경찰공무원 계	<u>1,209</u>	<u>1,211</u>	+2
·	·	·	
·	·	·	
총 경	<u>49</u>	<u>51</u>	+2
경 정	<u>164</u>	<u>166</u>	+2
경 감	<u>419</u>	<u>417</u>	-2
·	·	·	
·	·	·	
일반직 계	<u>788</u>	<u>789</u>	+1
·	·	·	
·	·	·	
보건연구사	<u>2</u>	<u>3</u>	+1
·	·	·	
·	·	·	

[별표 1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2,086</u>	<u>133,000</u>	+914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32,045</u>	<u>132,959</u>	+914
경찰공무원 계	<u>127,772</u>	<u>128,636</u>	+864
·	·	·	
·	·	·	
경 정	<u>2,801</u>	<u>2,808</u>	+7
경 감	<u>9,770</u>	<u>9,952</u>	+182
경 위	<u>15,211</u>	<u>15,277</u>	+66
경 사	<u>26,192</u>	<u>26,348</u>	+156
경 장	<u>32,707</u>	<u>32,872</u>	+165
순 경	<u>40,467</u>	<u>40,755</u>	+288
·	·	·	
·	·	·	
일반직 계	<u>4,251</u>	<u>4,301</u>	+50
·	·	·	
·	·	·	
행정주사	<u>71</u>	<u>79</u>	+8

•	•	•	
•	•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9</u>	<u>10</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48</u>	<u>49</u>	+1
•	•	•	
행정주사보	<u>352</u>	<u>372</u>	+20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5</u>	<u>38</u>	+3
•	•	•	
•	•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6</u>	<u>73</u>	+7
•	•	•	
•	•	•	
행정서기	<u>1,156</u>	<u>1,163</u>	+7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56</u>	<u>57</u>	+1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기	<u>234</u>	<u>236</u>	+2
•	•	•	
•	•	•	

[별표 16]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2,765</u>	<u>133,679</u>	+914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32,724</u>	<u>133,638</u>	+914
경찰공무원 계	<u>127,772</u>	<u>128,636</u>	+864
·	·	·	
·	·	·	
경 정	<u>2,801</u>	<u>2,808</u>	+7
경 감	<u>9,770</u>	<u>9,952</u>	+182
경 위	<u>15,211</u>	<u>15,277</u>	+66
경 사	<u>26,192</u>	<u>26,348</u>	+156
경 장	<u>32,707</u>	<u>32,872</u>	+165
순 경	<u>40,467</u>	<u>40,755</u>	+288
·	·	·	
·	·	·	
일반직 계	<u>4,930</u>	<u>4,980</u>	+50
·	·	·	
·	·	·	

행정주사	<u>112</u>	<u>120</u>	+8
·	·	·	
·	·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9</u>	<u>10</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48</u>	<u>49</u>	+1
·	·	·	
행정주사보	<u>399</u>	<u>419</u>	+20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5</u>	<u>38</u>	+3
·	·	·	
·	·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6</u>	<u>73</u>	+7
·	·	·	
·	·	·	
행정서기	<u>1,351</u>	<u>1,358</u>	+7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64</u>	<u>65</u>	+1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기	<u>234</u>	<u>236</u>	+2
•	•	•	
•	•	•	